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12
----------	-------

발의연월일 : 2021. 9. 16.

발 의 자 : 송갑석 · 오영환 · 어기구
안호영 · 조오섭 · 황운하
이장섭 · 전용기 · 민형배
이규민 · 김정호 · 이성만
의원(12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를 생산한 때에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규정은 1980년대 한·불 생산협정 당시 국내 항공부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서 현재는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항공기 부품의 경우 국제품질표준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어있어 개별 국가의 품질검사가 불필요하며, 「항공안전법」에서 인증 및 감항승인 등 안전관련 검사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바 있음.

우주비행체 및 관련 부품의 경우에도 안전보다 성능중심으로 발전되어 별도 감항인증 체계가 없고, 「우주개발진흥법」 제11조 등을 활용하여 우주비행체의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므로 현행법의 규정은 불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치국가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은 대부분의 단어가 한자로 쓰여 있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며,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일반 국민의 이해가 쉽도록 다듬음으로써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을 의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 10조 · 제11조 · 제19조제1항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삭제)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기 · 우주비행체 ·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 다. 한자어로 표기된 부분을 한글로 변경하고, 어문 규범에 맞고 이해가 쉽도록 개정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 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정비·수리·개조 등의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기·활공기·비행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

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 항공우주선 · 인공위성 · 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 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 · 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 ·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 · 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기류 및 소재류의”를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를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를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3호)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5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성능 및 품질 향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시험·평가기반 조성
2. 국내외 품질 표준 및 인증제도의 개발·보급·확산
3.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 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① 정부는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의 시설 또는 기기 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간·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회의 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條(目的) 이 法은 航空宇宙産業을 合理的으로 지원·육성하고 航空宇宙科學技術을 효율적으로 研究·開發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과 國民生活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航空宇宙産業”이라 함은 航空機·宇宙飛行體·關聯附屬機器類 또는 關聯素材類를 生産(製造·加工·組立·再生·改造 또는 修理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整備·修理·改造등 航空機使用者가 그 運航上의 필요로 행하는 作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事業과 航空機·宇宙飛行體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	제1조(목적)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제조·가공·조립·재생·개조 또는 수리하는 것을 포함하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정비·수리·개조 등의 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과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하는 응용사업(「항공운송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
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라
함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
련 부속기기류 또는 관련 소
재류의 생산을 업(業)으로 하
는 자를 말한다.

2. “航空機”라 함은 航空에 사
용할 수 있는 飛行機・回轉
翼航空機・滑空機・飛行船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航
空에 사용할 수 있는 機器를
말한다.

3. “宇宙飛行體”라 함은 地球大
氣圈 外를 飛行할 수 있는
宇宙發射體・航空宇宙船・人
工衛星・有人 또는 無人宇宙
船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
는 宇宙飛行에 사용할 수 있
는 機器를 말한다.

4. “關聯附屬機器類(이하 “機器
類”라 한다)”라 함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體의 構成品을
말한다.

5. “關聯素材類(이하 “素材類”

및 항공기사용사업은 제외하
다)을 말한다.

1의2. “항공우주산업사업자”란
항공기, 우주비행체, 관련부
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항공기”란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비행기・회전익항공
기・활공기・비행선과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
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3. “우주비행체”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항공우주선・인공위
성・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
는 기기를 말한다.

4. “관련부속기기류”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구성품을
말한다.

5. “관련소재류”란 항공기 또는
우주비행체의 생산에 사용되
는 재료를 말한다.

6. “항공우주과학기술”이란 항

라 한다)”라 함은 航空機 또는 宇宙飛行體의 生産에 사용되는 材料를 말한다.

6. “航空宇宙科學技術”이라 함은 航空宇宙産業에 관련되는 科學技術, 地球大氣圈 내외의 飛行에 관련되는 科學技術 또는 航空機・宇宙飛行體를 이용하는 應用科學技術을 말한다.

第3條(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의 수립) ① 政府는 航空宇宙産業의 開發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航空宇宙産業開發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 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 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 기술, 지구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기술을 말한다.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우주산업개발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체 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 획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체제 및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
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
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
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
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
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
하여 수립된 基本計劃에 따라
매년 그 施行計劃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
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기기류 및 소재류의 기술개
발에 관한 사업

사항

5.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
한 사항

6.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
항

7. 항공우주산업개발의 활성화
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
항

8.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관
한 사항

9.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수립
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야 한다.

제4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① -

-----각 호의-----
-----.

1. ~ 3. (현행과 같음)

4. 관련부속기기류 및 관련소재
류의-----

5.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성능검사와 품
질검사를 위한 장비개발 및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업

6.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및 소재류의 시험·평가 기
술의 선진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발
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
구기관, 과학기술분야정부출
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

5.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
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6.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
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7. -----
-----대통령령으로-----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

1. (현행과 같음)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신 설>

<신 설>

<신 설>

3.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생 략)

5.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7. (현행 제4호와 같음)

8. -----

-----대통령령으로-----

③ -----제1항에 따른-----

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0條(性能檢査 및 品質檢査) ①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生産을 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을 목적으로 생산한 품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

<삭 제>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의 검사업무를 취급하는 연구기관

2.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 또는 승인한 검사기관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항공우주산업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자가검사업체로 지정하여 자사생산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검사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에 합격한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검사합격증을 교부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

른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
상 · 시설 · 방법 · 절차 및 면제
의 범위와 기간, 전문검사기관
과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신청
절차, 검사합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신 설>

第11條(사용의 제한등) ① 第10條
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航空機 · 宇宙飛行體 ·
機器類 또는 素材類는 이를 사

제10조의2(성능 및 품질 향상 지
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
공기 · 우주비행체 · 관련부속기
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공기 · 우주비행체 · 관련부
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시험 · 평가기반 조성
2. 국내외 품질 표준 및 인증제
도의 개발 · 보급 · 확산
3. 항공기 · 우주비행체 · 관련부
속기기류 및 관련소재류의
성능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삭 제>

용하지 못한다. 다만, 試驗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를 試驗飛行등의 用途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항공안전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하여야 한다.

第12條(資金의 지원) 政府는 항공 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第13條(國有施設 및 機器등의 貸與등) ① 政府는 航空機・宇宙飛行體・機器類 또는 素材類의 研究・開發이나 生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規定에도 불구하고 國有의

제12조(자금의 지원) 政府는 항공 우주산업의 육성,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항공우주과학기술 관련 전시회의 개최 및 운영을 위하여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유시설 및 기기 등의 대여 등) ① 政府는 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의 연구・개발이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施設 또는 機器등을 航空宇宙産業事業者에게 有償 또는 無償으로 貸付・讓與 또는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讓與 또는 사용・收益의 조건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의 設置) 政府의 基本計劃의 수립과 이에 따른 政府의 重要政策 및 各 部處간의 主要業務의 調整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航空宇宙産業開發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第15條(審議會의 機能) 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基本計劃의 수립
2. 基本計劃과 관련된 政府의 重要政策 및 各 部處간의 主要業務의 調整
3. 基本計劃을 施行하는데 필요한 歲出豫算의 수립

하고 國유의 시설 또는 기기등을 항공우주산업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양여 또는 사용・수익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설치) 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 및 각 부처간의 주요업무의 조정
3.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출예산의 수립

4. 航空宇宙科學技術의 研究・開發活動에 대한 總括・調整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16條(審議會의 구성등) ① 審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 審議會의 委員長은 産業通商자원부장관이 되고, 委員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③ 審議會의 委員長은 民間・軍事部分간의 業務調整 및 協調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措置를 강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諮問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産業通商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審議會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4.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총괄・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産業通商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民間・군사부분간의 업무조정 및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大統領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産業通商자원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으로 정한다.

第19條(權限의 委任・委託) 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
고 인정할 때에는 第10條의 規
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산업통
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다른 行政機關・專門檢査
機關 또는 일정한 資格이 있는
者에게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
위원회의 안전 사전검토 및 자
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
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
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
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산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무위원
회의 안전 사전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기술 및 산업
에 대한 자료수집, 실태조사,
정책기획,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
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공
우주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u>여 設立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委託할 수 있다.</u>	
<u>第20條(檢査手數料)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性能檢査 및 品質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통상자원부령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u>	<u><삭 제></u>
<u>第21條(罰則)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u>	<u><삭 제></u>
<u>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삭 제></u>